

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(기각용)

|      |            |   |
|------|------------|---|
| 접수번호 | 보상심의위 공로 제 | 호 |
| 성명   |            |   |
| 주소   |            |   |

1. 귀하의 공로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하는 공로금 지급결정서正本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공로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- 가.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
- 공로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로금 지급결정서 正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나.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
-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공로금 지급결정서 正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첨부: 공로금 지급결정서 正본 2부

년 월 일

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

청인